

예 산 총 칙

2008년도 추경3회

제1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 세출 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총 계		243,126,108	7,293,783
일 반 회 계		203,897,519	6,116,926
특 별 회 계		39,228,589	1,176,858
	공 기 업 특 별 회 계	29,459,440	883,783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6,344,964	490,349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3,114,476	393,434
	기 타 특 별 회 계	9,769,149	293,074
	주택사업 특별회계	197,050	5,912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885,308	26,559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특별회계	299,256	8,978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557,448	16,723
	공업단지 특별회계	557,306	16,719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3,919,693	117,59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813,336	24,400
	동두천시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임시특별회계	2,404,509	72,135
	기반시설특별회계	135,243	4,057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4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405,991 천원으로 한다.

제6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7조 2008년 제3회 추가경정(최종)예산 성립 후 교부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간주처리 한다.